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71(2022. 7. 18 ~ 7. 22)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금융	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기업금융	②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기업송무	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을 제도화 하도록 함.
공포 법령	공정거래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입법/ 행정예고	기업금융	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상호금융업권 8.5%→10.5% △신용카드업 11%→13% △신용카드 외 여신전문금융업자 14%→15.5% △저축은행 16%→17.5%로 상향 추진.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구자근 (국민의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H1L1H2I0R7K1P1Y0V9B2I6E7M1V2	뉴스1 22.07.12. 구자근, 중소기업 대상 진흥공단의 금융지원 개정 법안 제출 https://www.news1.kr/articles/?4739113	22.07.12.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만이 구분되어 공시되고 있을 뿐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공시되고 있지 않으며,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되어 있지 않아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가계 및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프리미엄산정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아울러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목표이익률을 상향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향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고시로 되어있는 은행의 기준금리 · 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대출가산금리 공시)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미엄의 산정주기를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I2N0F7K0I5Y1M6Z2H8M1J0Z8Z2N3	한국경제 22.07.13. 野, '가산금리 공개법' 발의 "은행 목표이익률 공시해라" [입법 레이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136401i	22.07.13.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인이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분야 원격모니터링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환자에 대한 상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의료행위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의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으로 비대면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원격의료 범위 확대,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안 제34조제1항) 1)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2)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再診患者)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하여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원격의료 사고 책임소재 명확화(안 제34조제3항)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의료 사고 원인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함.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M1A0Y9L0Y1N1I1V3V2S4I0F8C5A2	경향신문 22.07.18.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청에 '대상·범위' 논쟁 점화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182137005	21.09.30. 제안 21.11.11.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의 비용, 시간 부담 등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제3조의2) 1)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아시아경제 22.07.12. 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 민간도 제·개정 가능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1211160443550	22.01.11. 일부개정 22.07.12. 시행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나.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제3조의5 신설).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제12조의3). 라.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마.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제16조의2) 1)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제24조의5, 제24조의8 신설). 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제24조의9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제36조). 아.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5조의3). 출처: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 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져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정 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가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100분의 8.5)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에도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0.5로 설정 출처: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3810&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파이낸셜뉴스 22.07.18. 금리급등에 취약 차주 지키기 나선 금융당국 https://www.fnnews.com/news/202207181039102872	22.07.13. ~ 22.07.2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임의자 의원 "중대재해 벌금 50억은 과도…중소기업 도산 이르게 할 수도"(2022.07.2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20000560

주요내용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시행 6개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 벌금 등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힘. 최근 정부가 기업인 형벌 제도를 개선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임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외주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전관리자나 감독자들이 종사자들에게 안전보건 이행조치에 대해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고, “이는 불법 파견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작업중지를 시켜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로 △중앙정부 역할 한계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 △안전 보건 관계자의 고용불안 및 인력 부족 문제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역량 부족 △부족한 행정력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활용 △안전 보건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안전 보건 역량 강화 등을 꼽기도 했음.

[연합뉴스][기사]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320명…작년보다 20명 감소(2022.07.19.)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9084300530?input=1195m

주요내용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작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31건(9.3%), 사망자는 20명(5.9%) 줄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됨.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자는 2018년 401명, 2019년 370명, 2020년 337명, 작년 340명, 올해 320명으로 감소 추세임. 올해 상반기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155명(147건)으로 절반 가까이었고 제조업 99명(92건), 기타 업종 66명(64건) 등이 뒤를 이음. 전체 사고를 안전조치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작업 절차·기준 미수립 108건,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70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숨졌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2건(20.2%),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했음.

[매일경제][기사]위헌 논란에도 강행하더니…'종이호랑이'된 중대재해법(2022.07.1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629544/

주요내용 중대재해 사건에 불구속·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작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의원입법으로 급조돼 명확성의 원칙 등 법률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노동 현실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업 경영책임자는 아직 없지만 추후 사례가 생길 경우 몇 로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예정임.

정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13일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 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 목적의 다른 법률 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 사례보다 과도한지 △시대 변화로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에 따라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다만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 개정이 불가능해 정부 의지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인데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고,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음.

[파이낸셜뉴스][기사]"올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디지털·반도체 인력 18만명 양성"(2022.07.15.)

https://www.fnnews.com/news/202207151326485314

주요내용 정부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오는 10월 중 마련될 예정이며,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기업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